

의안번호	제 251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8월 13일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13일

발의자 : 이수완, 윤남진, 김기창,
박병진, 연종석, 오영탁,
최경천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 “당해” → “해당”, “익월” → “다음 달”

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표기함(안 제14조)

- (현행) “별표” → (개정) “별표 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라. 조례안 예고 : 해당 없음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14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도의 관련 실·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임기는 <u>당해</u>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이사) ----- ----- ----- ----- ----- ----- ----- <u>해당</u> ----- -----.</p>
<p>제11조(사채발행 등) ① (생략)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u>당해</u> 연도에 상환하여야 하고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p>	<p>제11조(사채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해당</u> ----- -----.</p>
<p>③ (생략) 제13조(업무상황의 공표) 사장은 <u>당해</u> 연도의 업무상황을 6월과 12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u>익월</u> 2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3조(업무상황의 공표) ----- <u>해당</u> ----- ----- <u>다음 달</u> ----- ----- -----.</p>
<p>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79조 <u>별표</u>와 같다.</p>	<p>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 ----- ----- <u>별표 2</u>-----.</p>